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49

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진선미・이학영・임오경

김문수 • 문정복 • 이광희

조승래 · 강경숙 · 박성준

정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착·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.

대통령령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생·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실제로는 심의위원의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착·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, 가해학생·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위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, 형식화되어

있는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3조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기관의 장"을 "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1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6조,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.
- 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 이었던 경우
- 3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 생·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

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- ⑧ 가해학생·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제7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·직급 등 위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⑨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피신청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분쟁을 조정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・운영) 제1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・운영) ① ~ ③ (생 략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 되는 경우 교육장(교육지원청 이 없는 경우 해당 시·도 조 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)은 가 ----기관의 장을 말한 해학생 · 피해학생 및 그 보호 다. 이<u>하 이 조에서 같다</u>-----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1. • 2. (생 략) ⑤ (생략) ⑤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6 조,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 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. 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 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 던 경우

<신 설>

<신 설>

- 2.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 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 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생·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 ⑧ 가해학생·피해학생 또는
- 그 보호자는 제7항에 따른 기 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심의위원회 위 원의 소속·직급 등 위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

	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⑨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
	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
	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
	해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
	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
	참여하지 못한다.
<u><신 설></u>	⑩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
	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
	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
	회피할 수 있다.
<u>⑥</u> (생 략)	<u>①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